

본 안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객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 ■ 신청 대상

- 당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현재 연체 중이거나, 향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법 제35조) :
  1.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1. 고객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당사의 미비한 서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02-2135-5574)로 유선 신청 후,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 이메일: cs@gnoppa.kr

---

## ■ 제출 서류

1. 채무조정 요청서 (소정 양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소득 증빙 또는 상환능력 확인 서류 (예: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등)
4. 기타 필요한 경우, 당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 '채무조정안'은 고객 요청에 따라 당사가 작성하여 별도 안내 드립니다.

---

## ■ 채무조정 가능 범위 (내부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전액 유예 (일정 기간 내)
- 대출 만기 연장 (합의 시점 기준으로 재설정 가능)
- 약정이자율 조정 (내부 승인 시, 법정한도 이내에서 가능)

※ 당사는 원금 자유상환 구조로, 원금 분할 변제는 별도 조정 항목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유예 기간 중에도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채무조정 처리 절차 및 효력

### ▶ 채무조정 처리

1. 고객이 채무조정을 요청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2. 당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심사 및 결과 통지
3. 고객이 조정안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10영업일 이내)
4. 고객이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 합의서' 작성
5. 합의서 작성일 기준으로 채무조정 효력 발생

### ▶ 채무조정 효력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경우, 채무조정 내용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추심이 일시 유예될 수 있습니다.
-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환 유예, 이자 조정, 만기 연장 등이 실행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은 개별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용정보 등재 또는 조정 이력에 따라 향후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효력은 해당 채권이 제 3자(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수인은 채무조정 합의 내용을 승계합니다.

---

## ■ 채무조정 종료 및 합의 해제

###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법 제39조)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당사가 제안하거나 법 제3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당사가 결정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당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경우
4.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객이 채무조정안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1. 고객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고객이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고객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채무조정 합의 해제 시, 계약은 원상회복되며 연체이자 및 기존 상환 조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

##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